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5-36
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필요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변경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 구성 (안 제2조)
- 다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에 대한 본조 신설(안 제2조의2)
- 마.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5. 3. 12. ~ 4. 1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권고사항 있음

- 평가기준 : 접근성과 공개성

- 평가결과 : 위원회 업무처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,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

- 조치사항 : 권고안 반영

구청장 방침	심의회 상정안
<신 설>	제5조(회의) ①~③ <현행과 같음> ⑤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 위원명단, 회의안건과 심의·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 보존하여야 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공무원 : 기획경제국장, 감사담당관, 재무과장
2. 민간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

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2조제3항 본문 중 “위촉직”을 “공무원이 아닌”으로, “2년으로 하되,”를 “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보궐”을 “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”으로, “전임자의 잔임”을 “전임위원 임기의 남은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
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

제4조 중 “기능이 유사한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위원회의 회의”로, “구분하고, 위원회는”을 “구분하고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정기공시시”를 “정기공시 시”로, “수요발생시”를 “수요발생 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위원회에 제출할 의안”을 “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석위원명단, 회의안건과 심의·의결 내용 등이

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

제7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.</p>	<p>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무원 : 기획경제국장, 감사담당관, 재무과장</li> <li>2. 민간위원 :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예산 및 회계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</li> </ol>
<p>② 위원은 공무원, 대학교수, 시민단체 대표,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</p>	<p>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3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③ 공무원이 아닌 -----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-----  
----. ----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-----  
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-----  
----.

제2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

2.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

제4조(위원회 통합운영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<신 설>

관한 사항

2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원회 통합운영) -----  
-----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-----  
-----  
-.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---  
----- 구분하고,  
-----.

② ----- 정기공시 시 -----  
----- 수요발생 시 -----  
-----.

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

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 
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  
다.

②·③ (생략)

제8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의 개  
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  
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 
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 
으로 정한다.

결한다.

⑤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, 참  
석위원명단, 회의안건과 심의·의  
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  
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-----  
----- 1명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참  
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 
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 
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에  
-----  
-----